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셜제도공화국, 자메이카, 룩셈부르크대공국, 리투아니아공화국, 아르메니아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조지아, 시에라리온공화국 및 잠비아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고, 니우에와의 외교협력 강화를 위하여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니우에를 관할하도록 지정하며,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나우루공화국,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 및 라이베리아공화국을 관할하는 대사관의 위치를 변경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 수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9명, 9등급 2명, 8등급 6명, 5등급 또는 6등급 9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 및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및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 겸임하는 국가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8등급 3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정원 2명(8등급 2명)은 종전의 정원 2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9등급 2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

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8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및 주재관 정원 2명(5급 2명)을 각각 감축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1. ~ 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2호 중 “뉴질랜드·마셜제도”를 “뉴질랜드·니우에·마셜제도”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나우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피지공화국 수바”를 “마셜제도공화국 마주로”로 하고, 같은 목의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란 다음에 주니우에대한민국대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의 주마셜제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피지공화국 수바”를 “마셜제도공화국 마주로”로 하고, 같은 목의 주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피지공화국 수바”를 “마셜제도공화국 마주로”로 한다.

주니우에대한민국대사관	뉴질랜드 웰링턴	니우에	니우에
-------------	-------------	-----	-----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멕시코합중국 멕시코시티”를 “자메이카 킹스턴”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벨기에왕국 브뤼셀”을 “룩셈부르크대공국 룩셈부르크”로 하고, 같은 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폴란드공화국 바르

샤바”를 “리투아니아공화국 빌뉴스”로 하며, 같은 목의 주아르메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러시아연방 모스크바”를 “아르메니아공화국 예레반”으로 하고, 같은 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핀란드공화국 헬싱키”를 “에스토니아공화국 탈린”으로 하며, 같은 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바쿠”를 “조지아 트빌리시”로 하며, 같은 목의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카자흐스탄공화국 누르술탄”을 “카자흐스탄공화국 아스타나”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아부자”를 “시에라리온공화국 프리타운”으로 하고, 같은 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아부자”를 “시에라리온공화국 프리타운”으로 하며, 같은 목의 주잠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중 “짐바브웨공화국 하라레”를 “잠비아공화국 루사카”로 한다.

별표 2 중 계란 및 산업통상자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계	340	70	270	33	17	190	30
---	-----	----	-----	----	----	-----	----

산업통상자원	52		52	4	2	41	5
--------	----	--	----	---	---	----	---

별표 3 중 총계 “944”를 “9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0”을 “228”로 하며, 4급 이하 “227”을 “225”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6”을 “700”으로 하며, 8등급 이하 “650”을 “64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8”을 “107”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2”로 하며, 4급 이하 “35”를 “34”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449”를 “1,483”으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449”를 “1,48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22”를 “231”로 하고, 8등급 이하 “1,059”를 “1,08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나우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2.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셜제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3.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4.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5.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6.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7.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아르메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8.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9.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10.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11.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
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12.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잠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공관 사무를 개시한 날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주
재관 정원 2명(산업통상분야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 중 이 영 시행
이후에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일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 정원 7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국) ① ·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생 략) 2. 나우루 · 네팔 · <u>뉴질랜드 · 마 셜제도 · 마이크로네시아연방 · 몰디브 · 바누아투 · 방글라 데시 · 부탄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스리랑카 · 아프가니스 탄 · 인도 · 쿡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 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u> 3. ~ 5. (생 략)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u>뉴질랜드 · 니 우에 · 마셜제도</u> ----- ----- ----- ----- ----- ----- ----- ----- ----- ----- ----- ----- ----- ----- ----- ----- 3. ~ 5.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44</u>	<u>936</u>	-8
·	·	·	
일반직 계	<u>230</u>	<u>228</u>	-2
4급 이하	<u>227</u>	<u>225</u>	-2
·	·	·	
외무공무원 계	<u>706</u>	<u>700</u>	-6
·	·	·	
·	·	·	
8등급 이하	<u>650</u>	<u>644</u>	-6

[별표 4]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8</u>	<u>107</u>	-1
·	·	·	
·	·	·	
일반직 계	<u>43</u>	<u>42</u>	-1
4급 이하	<u>35</u>	<u>34</u>	-1
·	·	·	
·	·	·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449</u>	<u>1,483</u>	+34
외무공무원 계	<u>1,449</u>	<u>1,483</u>	+34
·	·	·	
고위공무원단	<u>222</u>	<u>231</u>	+9
·	·	·	
·	·	·	
8등급 이하	<u>1,059</u>	<u>1,084</u>	+2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8